

【사건번호 2020-011】 한국국제교류재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 : 한국국제교류재단
-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
 - 발간물 전자파일
- 신청목적: 출판 및 전자책 제작

2. 신청취지

- 신청인은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으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영리적 이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
 -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, 삽화 등에 관한 권리가 문제될 경우 텍스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함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수집·관리 및 제공 현황

- 이 사건 데이터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 초급 2권, 중급 2권, 고급 2권 등 총 6권이며, 이 사건 데이터에 표시된 바에 따르면 집필진은 총 9인으로 구성됨
 - 다만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공공데이터 담당자 진술을 고려하면, 교재개발 회의 등을 통해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진이 창작적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
 - ※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권자가 저자 및 연구진 등 총 16명이라 주장함
 - 저자 외에도 제3자가 집필진의 원고와 사진, 삽화 등을 디자인, 편집하여 현재의 데이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,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의사 확인이 어려움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며, 공공누리 4유형을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음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함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,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

다.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.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비공개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우며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
- 또한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신청인의 이용행위가 해당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
 - ※ 2018-011사건(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데이터)에서 공공기관이 해당 사건 대상 데이터에 대해 2차적저작권을 양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,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되 신청인은 해당 데이터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바 있음
- 이 사건 데이터에 표시된 내용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자는 집필진 9인이며, 피신청인은 집필진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(저작권 등록정보)
 - ※ 디자인 및 편집을 담당한 제3자도 이 사건 데이터 작성에 창작적 기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, 이 사건 데이터에 표시된 내용과 교재발간협약의 체결시점 등을 고려하면 디자인 및 편집을 담당한 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제공범위 판단 검토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움

- 다만 이 사건 데이터 내에는 출판사, 방송사, 영화사 등이 저작권을 보유한 삽화 및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, 이들 저작권자로부터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
 -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
- 신청인은 사진 및 삽화의 저작권이 문제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텍스트만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하나, 그러한 이용형태는 저작인격권자가 가지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
 - 비록 피신청인이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, 저작인격권자는 집필진이며 그 외 연구진이나 편집 및 디자인을 수행한 자 등 집필진 이외의 권리자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
 -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구진 및 저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이 사건 데이터의 원래 판형, 체제,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변형이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, 피신청인측 사업담당자가 집필진 중 일부의 반대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므로,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

라. 기타

- 피신청인은 그 외에도 신청인이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에 휘말릴 우려,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피신청인의 업무수행 및 공공외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, 학습자의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였으나,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범위 판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고려하지 아니함
-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는 등록 저작물로서,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없고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 저작권 관리를 신탁하면 공공데이터 개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,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안 검토에 고려하지 아니함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‘공공데이터법’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(제17조제1항)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(제17조제1항각호)
- 이 사건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,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(발간물)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, 이 사건 데이터에는 사진 및 삽화 등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 - 신청인은 사진 및 삽화 등 제3자 권리정보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으나, 이 경우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인격권(동일성유지권)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

5. 조정결과

- 조정성립